

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홍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6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1년 3월 20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

(홍경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.

발 의 자 : 홍경호, 성복임, 장경민,
이건행, 신금자, 이길호,
이희재, 김귀근, 이우천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 (안 제4조)
- 다.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 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관광지원센터의 설치 규정 (안 제8조)

3. 관련법령
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, 제76조

군포시 관광 진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)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.

1. 관광객 유치사업
2.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
3. 관광기념품,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
4.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·제공
5.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관광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관광 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해지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기관이 관광 업무에 대한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받은 관광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4.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관광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,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사업
2.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
3.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시장은 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